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10. 26 선고 2021가단1317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○○○

변 론 종 결

무변론

판 결 선 고

2021. 10. 26

주 문

1. 피고와 ○○○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1. 14.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○○○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○지방법원 ○○○등기소 2018. 11. 16. 접수 제○○○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